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1555호, 2026.4.21. 공포, 2026. 10.22.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 제도가 도입되어 교육의 내용·방법, 교육기관,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신청 절차 및 감경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 도입에 따라 보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단기 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도입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기간, 가입 종류, 가입 대상, 가입 금액, 증서 제출 절차 및 세부사항의 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 제공 또는 보증료 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교육 방법 및 교육 시간 등을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 나. 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 지정, 교육기관의 세부 시행 계획 제출, 교육 수료증 발급 등을 규정(안 제16조의3 신설)

- 다.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신청 및 절차를 규정(안 제16조의4 신설)
- 라.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 대상이 되는 공사를 도급 금액 1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개월 이내의 단기 정보통신공사로 규정(안 제26조의2 신설)
- 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기간, 가입 종류, 가입 대상 및 가입 금액을 정하고, 보험증서 등의 제출 절차와 세부 사항의 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안 제26조의3 신설)
- 바.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기준, 감경 제한 및 감경 제외 사유를 규정(안 별표 8 제5호 신설)
- 사.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 10 제5호의2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3, 제26조의2, 제35조의2, 제69조 및 제7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없 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6.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정보통신공사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계 교육(이하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규
2.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윤리경영
3.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 관리
4. 그밖에 건전한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은 강의·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의3(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또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전년도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을 받은 공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법 제14조제3항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제3항의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 이수사항을 확인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영업정지기간 감경 요청 등) ① 법 제14조의3제2항후단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을 감경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제16조의3제3항의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한 시·도지사에게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예외 범위) 법 제26조의2제2항의 “소규모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2. 공사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의 정보통신공사

제26조의3(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①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기간, 가입 종류, 가입 대상 및 가입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 기간: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 종류: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 공제
3. 가입 대상: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가입 금액: 정보통신공사의 계약금액

②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공사업자는 해당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및 절차, 가입 금액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8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영업정지기간 감경 요청의 대상이 된 영업정

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한다.

가. 감경 기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 7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공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3일을 감경하되, 감경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감경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2)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밖에 시공능력 평가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3) 법 제6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다. 감경 제한

가목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공사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을 사유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별표 10 표 중 제5호 다음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5의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 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4호의2	3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정보통신공사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이하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규 2.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윤리경영 3.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 관리 4. 그밖에 건전한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은 강의·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 설>	제16조의3(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또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신 설>

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전년도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을 받은 공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법 제14조제3항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제3항의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 이수사항을 확인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영업정지기간 감경 요청 등) ① 법 제14조의3제2항후단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을 감경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제16조의3제3항의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한 시·도지사에게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사업자에

<신 설>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관계 확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26조의2(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예외 범위) 법 제26조의2 제2항의 “소규모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2. 공사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의 정보통신공사

<신 설>

제26조의3(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① 법 제35조의2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기간, 가입 종류, 가입 대상 및 가입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 기간 :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 종류 :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 공제
3. 가입 대상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가입 금액 : 정보통신공사의 계약금액

②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보

	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공사업자는 해당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및 절차, 가입 금액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비고 1~4. (생략) <신 설>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비고 1~4. (현행과 같음) 5.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영업정지기간 감경 요청의 대상이 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다음

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한다.

가. 감경 기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 7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공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3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감경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2)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밖에 시공능력평가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3) 법 제6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1. ~ 5. (생략)

<신 설>

6. ~ 18. (생략)

면승낙을 받은 경우

다. 감경 제한

가목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공사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을 사유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1. ~ 5.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5의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 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4호의 2	300만원

6. ~ 18.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네트워크정책과	
연 락 처	044-202-6425